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0일 박종성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의 제명이 조례내용과 차이가 있어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목의 변경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변경
 - 조례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그 밖에 일본식 표현(기타 등),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4. 검토의견

금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과의 일치성을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제목의 변경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변경

(의한 → 따른, 해당할 때 또는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면)

- 조례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사용기간중 → 사용기간 중)

- 그 밖에 일본식 표현(기타 등),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기타 → 그 밖의, 망실 → 훼손 등)

금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과의 일치성을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참고자료

□ 시설의 의미와 타 시도 조례

○ “시설” 및 “시설물” 사전적 의미

- “시설물”은 시설에 해놓은 구조물
- “시설”은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함

○ 타시도 교육원 사용료 조례 명칭 현황

- “시설”포함 : 7개 시도(인천, 부산, 광주, 충남, 전남, 강원)
- “시설”미포함 : 1개 시도(충북)
- 사용료 조례 미제정 : 8개 시도(서울, 대구, 울산, 경기 등)

○ 운동장의 시설 포함 여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운동장을 체육 시설에 포함하였고, 『건축법시행령』에서도 운동장을 운동시설로 포함 하였음.

※ 참고자료

- 운동장 [playground] : 운동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구역.

체조, 운동 경기, 놀이 따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구나 설비를 갖춘 넓은 마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3. 운동시설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